

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7일

※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.

신청인	상호:	
	대표자:	사업자등록번호
	사무소 소재지:	전화번호:
	전자우편주소:	

※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1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이전에 검사를 신청한 시설의 경우 처리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세부	영업장 면적	[] 100㎡ 미만	[] 100㎡ 이상
내용	업 태:		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수수료

처 리 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현지 검사	→	증명서 작성	→	통 보
신청인		한국가스안전공사		한국가스안전공사		한국가스안전공사		